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00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 안상훈·박덕흠·박준태

이성권 • 백종헌 • 이달희

권영진 • 인요한 • 김소희

최보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원헬스란 사람, 동물,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접근 방식임.

인간·동물·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.

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,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공동 대비·대응 위한 범부처·다분야·다학제 간 접근·협업방안을 추가함(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).
- 나.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 ·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7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·대응하기 위한 사람, 동물,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·다분야·다학제(이하 "감염병통합관리"라 한다) 간 접근·협업 방안

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7(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및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간 공동 대비·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(이하"협의체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질병관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	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
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2의2. (생 략)	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3.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
	<u>감염병발생에 공동 대비·대</u>
	응하기 위한 사람, 동물, 환
	경을 포함한 범부처・다분야
	• 다학제(이하 "감염병통합관
	리"라 한다) 간 접근・협업
	<u>방안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조의7(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)
	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
	관리 및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
	체, 공공기관 간 공동 대비ㆍ
	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
	통합관리협의체(이하 "협의체"
	<u>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</u>
	<u>있다.</u>
	② 질병관리청장은 협의체의
	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
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
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
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
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
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
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
정한다.